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57 | 2026.11.9. (2026.11.2. ~ 2026.11.8.)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국무조정실>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전·후방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 설치, 재활용 등 전분야에 걸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여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산업통상부>는 **「AI 팩토리 확산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산업부는 전국 245개 기업의 AI 팩토리 전환을 지원해왔으며 구체적인 성과도 확인하였지만, 혁신이 개별 공장이라는 파편화된 '점(點)'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도 뚜렷하게 나타나 점 단위의 성과를 '선(線)'과 '면(面)', 나아가 '입체(立體)'로 확장하는 4단계 확산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행정안전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대상 업종의 기준을 완화하고, 기회발전특구에서 신설·증설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는 금융의 디지털화 등으로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이 단기간에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기존 정리절차로 대응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 금융기관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 개시 요건과 절차상 특례를 마련하고 주주·채권자 보호 장치를 도입하려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입법(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삭제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 명령을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자진신고자 감면 혜택에서 시정조치를 제외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자발적 감축실적의 발행·거래·소각에 관한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기관·평가기관·거래소의 역할과 감독·제재 체계를 정비하며, 자발적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발적 탄소시장법안(정태호의원 등 12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삭제지원 대상 신상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추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3인)」,**

공공재원으로 도입된 연구시설·장비 전반을 아우르는 관리체계와 보유기관의 의무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연구자가 공공영역에 도입된 연구시설·장비에 편리하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신진연구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3인)」,**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공동물류·공동배송 체계 구축, 공동배송센터, 냉동·냉장 시설 설치·운영 및 관련 상인교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당일배송특화시장을 지정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의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법률의 제명을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법」으로 바꾸고, 국무총리 소속 로봇산업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융합 촉진, 중소기업 특별지원, 로봇데이터 기반 구축, 지역 로봇산업 거점 지정 등 진흥 기반을 대폭 보강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0인)」,**

지속가능항공유 공급 의무 제도를 마련하고, 공급 의무의 미달분에 대한 유예 등 조정제도를 추가하는 한편 초기 공급망 구축과정에서 기업체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관련 특례조항을 마련하기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6인)」,**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이 공표된 자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보상대상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주택 등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보상 선택권을 넓히고, 대토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전매를 허용하는 등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법사위>, <정무위>, <과방위>, <국방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복지위>, <기후노동위>, <국토위>, <예결위> 등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국무조정실) ····· 7
- 「AI 팩토리 확산전략」 발표(산업통상부) ·····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 9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 9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 11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 11
-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 12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3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융위원회) ····· 13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 1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 15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8인) ····· 1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 16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연의원 등 11인) ····· 1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0인) ····· 17
- 자발적 탄소시장법안(정태호의원 등 12인) ····· 18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3인) ····· 18
-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3인) ····· 19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3인) ····· 19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 20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은수의원 등 10인) ····· 20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 20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0인) ····· 21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 21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6인) ····· 22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 22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 23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 23
-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24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 24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 2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25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 26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 26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 27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 27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1인) ····· 27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5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방송통신(TMT)]** 정보보호 공시의무, 2027년부터 전체 상장사 등으로 확대
- **[지식재산권]** 생성형 AI 관련 음악 저작권 분쟁의 최신 동향과 시사점 – Suno 소송, AI 음성 복제 판결을 중심으로 –
- **[방송통신(TMT)]** 방미통위, 플로팅광고 삭제제한행위 조치기준 강화
- **[금융]** 최근 강화된 상장폐지 심사 기조에서 상장유지 및 개선기간 부여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지식재산권]** AI 리버스 엔지니어링(REA)과 ArtCraft 사례로 살펴보는 저작권법적 쟁점
- **[조세]** 세종 미래상속 Insight 4호
- **[환경]** 2026년 10월 기후환경 법규 업데이트 리포트
- **[모빌리티]** 2026년 3분기 모빌리티 규제 동향 - 레벨4 자율주행 제도 정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등
- **[글로벌리스크대응]** 미국 중간선거 분석 – 한국 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 **[금융]** 디지털금융 ISSUES (2026. 10. 16. – 2026. 10. 29.)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 ESS 설치·이차전지 재활용 규제 등 18개 규제 개선안 확정 -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에서 개선방안 논의·확정	2026-11-02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전·후방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제조, 설치, 재활용 등 전분야에 걸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여 「이차전지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확정하였음

이차전지는 전기차·로봇·드론 등 첨단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는 미래 성장동력이자 에너지 전환의 핵심 기반으로 '미래산업의 쌀' 또는 '제2의 반도체'로 불림. 우리 이차전지 업계는 한때 세계시장을 선도하였으나 최근에는 중국업체들이 저가 LFP배터리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음

업계에서는 이차전지 산업의 빠른 기술변화와 생산공정 특성에 비해 일부 제도와 행정절차가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관련 규제와 행정부담의 개선을 요구해왔음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은 이차전지 산업 전반의 규제애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조정을 통해 기술 발전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특히, ESS 등 새로운 이차전지 수요 확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폐배터리 활용 등 이차전지 사용후 처리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에 집중하였음

발굴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거쳐 6개 과제 개선안을 먼저 발표(8.28), 추진하고 있으며, ESS 설치·재활용 분야 등 12개 개선과제가 10월30일 민생분과위원회에서 확정되었음

이날 발표된 개선안의 주요 개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ESS 컨테이너 내부 CCTV 설치 규제 합리화

- (현행)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컨테이너형 ESS가 증가하고, BMS 등 CCTV 보다 효과적으로 배터리 관리가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었음에도 모든 컨테이너형 ESS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개선) 내부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BMS 등 CCTV 보다 효과적인 배터리 관리 기술이 적용된 경우, CCTV 설치 의무를 제외할 예정임. 이를 위해 연말까지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2027년 「한국전기설비규정」(기후부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② ESS 배터리와 전기설비 분리 설치 규제 완화

- (현행) 해외는 전력변환장치(PCS) 등 전기설비를 배터리와 일체화한 제품이 설치되고 있지만 국내는 전기설비를 배터리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격실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막혀, 전기설비를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하므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불가능함
- (개선) 단일 컨테이너 내에 전기설비들을 이차전지와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의 내부에 PCS를 설치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고, 안전성 입증 후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③ 이차전지 재활용산업 통합환경관리 기준 합리화

- (현행)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은 다양한 원료가 함유된 배터리 제품을 취급하고 있어, 관리하는 폐기물·화학물질의 종류도 다양함. 이 중 일부의 변경에 따른 공정 변경 시에도 반복적으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필요함
- (개선) 예외 기준이 없어 사소한 변경에도 변경허가·신고가 필요했던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대기배출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같은 종류의 폐수배출시설의 배출량이 100분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면제하거나 사후신고로 갈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④ 폐기물 재활용 시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 중복 규제 개선

- (현행) 폐기물재활용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등과 동일하게 폐기물을 취급하고 있음에도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를 적용 받고 있어 처리 공정 전반에 걸쳐 이중적인 행정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임
- (개선) 폐기물재활용업 등의 별도 특화기준을 수립하여 규제 수용성을 높이고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따른 업종간 규제 수준 차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산업통상부	**「AI 팩토리 확산전략」 발표** - 그간의 개별 공정 단위 제조AI 혁신, 공급망·산단 등 생태계 전체로 확장 - 245개 AI팩토리·541개 AI모델 정밀분석, 우수 AI기업 발굴·전문기업 육성	2026-11-03

산업통상부는 기업인과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 팩토리 전략회의'를 열고 「AI 팩토리 확산전략」을 전격 발표하였음

그간 산업부는 전국 245개 기업의 AI 팩토리 전환을 지원해왔으며, 38개 우수사례를 통해 생산성 30.1% 향상, 불량률 15.5% 감소 등 구체적인 성과도 확인하였음. 그러나 한 공장에서 성공한 기술을 다른 공장에서 처음부터 다시 개발해야 하는 중복 투자가 발생하는 등 혁신이 개별 공장이라는 파편화된 '점(點)'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도 뚜렷하게 나타났음

이에 산업부는 점 단위의 성과를 '선(線)'과 '면(面)', 나아가 '입체(立體)'로 확장하는 4단계 확산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힘

먼저, 우수 모델을 골라내는 정밀 진단에 착수함. 기존에 개발된 541개 AI 모델을 분석해 확산 가능성이 높은 과업을 시각화한 'M.AX 핵심과업 히트맵'을 마련함. 또한, 제조기업의 AX 수준에 대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M.AX 처방전'을 발급하고, 투자 대비 성과(ROI) 평가체계를 신설해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현장 투자를 이끌어냄

검증된 AI 모델은 유사 공정으로 이어지는 '선'의 확산으로 발전함. 예를 들어, 철강 가열로의 온도 예측 AI 모델을 타 기업의 유사 열처리 공정에 적용하는 방식임. 우수 모델을 현장 특성에 맞게 추가학습(fine-tuning)해 재사용함으로써 확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특정 업종에 특화된 제조AI 전문기업도 집중 육성함

나아가 이 선들을 묶어내는 '면'의 연대도 추진함. 대기업(앵커기업) 주도로 협력사와 함께 공통의 제조 난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AI 모델을 개발·실증해 공급망 전체의 경쟁력을 높임. 또한, 자동차·기계(광주·창원), 반도체·디스플레이(천안·청주·구미), 석유화학·철강(울산·여수), 조선(대불·군산) 등 지역 특화 산단별로 공통 AX 수요를 발굴해 지역 주력산업이 다 함께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함

최종 지향점은 생산계획부터 제조·검사·물류까지 공장 전체를 AI가 통합 제어하는 풀스택(full-stack) AI 팩토리로의 '입체'적 혁신임. 기술개발 초기부터 실제 제조현장에서의 실증을 병행하여 요소기술을 빠르게 고도화하는 한편, 공장 단위 통합실증을 통해 완전자율운영 기술을 확보할 계획임. 검증된 기술은 모듈화·표준화하여 다른 제조현장에 확산하고, 민간의 후속 사업화로도 연계함

정부 지원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업의 자발적인 AI 투자와 도입이 지속되는 자생력 있는 M.AX 생태계 조성도 적극 추진함. 제조기업과 AI기업 간 네트워킹을 확대하여 현장의 AI 수요와 우수 AI 기업의 기술·솔루션을 연결하는 한편, 산업성장펀드, 국민성장펀드 등 우수 AI기업의 성장과 대규모 M.AX 프로젝트에 필요한 투자를 기업 성장 단계별로 지원할 계획임. 아울러, 'M.AX Academy'를 통해 제조업 재직자의 현장 AX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 대상 제조AI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산업계에 필요한 인재 공급도 확대함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11-12 시행 예정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 시에도 국가유산수리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88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1명의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5개 이하의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하는 경우 국가유산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을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11-13 시행 예정

부동산개발사업의 신속한 인가·허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령해석의 지원, 협의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의 조사 및 사전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32호, 2026. 5. 12. 공포, 11. 13. 시행)됨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허가 등에 관련된 법령의 해석이나 절차 및 내용에 관한 협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센터는 4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11.05. ~2026.12.15.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따른 지방주거복지세로의 전환 및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방식을 원칙적 보통징수, 예외적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신고납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수도권 외 지역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과제외를 연장하는 한편,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확산을 위해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를 신설하고, 자동차 등록자료 통보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전화: 044-205-3833, 팩스: 044-204-8969)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11.05. ~2026.12.15.

농어업경쟁력 강화 등 지방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지원 강화, 지역 균형성장 촉진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00000호, 2026. 12. 00. 공포·시행)에 따라 자경농민 등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기회발전특구에서 신설·증설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에 대한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 기숙사·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한 대수선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범위 규정 (안 제13조의4)

②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중 감면 대상인 주택을 에너지 절감률 등이 70퍼센트 이상인 주택으로 기준 강화 (안 제24조)

③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대상 업종을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기준 완화 (안 제39조의2)

④ 기회발전특구에서 신설·증설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규정 (안 제39조의3)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05-3853, 팩스: 044-204-89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2026.11.02. ~2026.12.14.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653호, 2026. 5. 19.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지역공공연구기관 및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의 범위,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제출 및 변경 절차, 지역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지정에 관한 사항, 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지역거점연구기관의 지정·운영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지역기업연구소의 범위 및 지원,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의 지정 및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전화: 044-202-67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11.02. ~2026.11.13.

국가안보·국민생활 중대분야 양자사업 영향평가, 규제개선 신청, 양자인공지능·공급망 확보 전담기관 지정, 양자과학기술 보호 및 국방분야 적용 시책 등을 신설·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6. 5. 19. 공포, 2026. 11.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양자종합계획·시행계획 및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절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성과의 공개방법 등 기존 시행령 운영상 나타난 비효율을 함께 개선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혁신기술개발과 (전화: 044-202-6874, 팩스: 044-202-602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11.02. ~2026.12.14.

현행법(제2조제1호사목)상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의 용어는 규정되어 있으나 세부 정의 및 범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의 개념과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개념(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자)을 정의하여 법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튜브 영상 및 숏폼 콘텐츠 등 뉴미디어영상콘텐츠에 대한 체계적인 진흥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의 정의 및 지원대상·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조의2 신설)**
- 법률에 따른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함
-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자를 '콘텐츠크리에이터'로 정의함

②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제작지원 근거 마련 (안 제10조 개정)**
-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제작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작 지원 대상 범위에 이를 추가 규정함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트산업과 (전화: 044-203-3242)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11.05. ~2026.12.07.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권한을 기존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토부장관의 직권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967호, 2026.9.22. 공포, 2026.12.23. 시행)됨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 **시·도지사의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신설 (안 제5조의2)**

② **시·도지사의 시범운행지구 지정 변경 등 신설 (안 제6조의2)**

③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수정 (안 제5조)**

④ **시범운행지구 지정 변경 등 수정 (안 제6조)**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 (전화: 044-201-3852, 팩스: 044-201-5587)

금융위원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1.02. ~2026.12.14.

금융의 디지털화 등으로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이 단기간에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기존 정리절차로 대응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 금융기관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 개시 요건과 절차상 특례를 마련하고 주주·채권자 보호 장치를 도입하려는 것임

① 신속정리 대상 금융기관의 지정 및 처분 근거 마련 (안 제14조의10제1항·제2항)

-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을 신속정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계약이전·제3자 인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② 계약이전 등 신속정리 지원 (법률안 제14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 계약이전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다른 금융기관을 지정해 참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지원 조건 등을 미리 제시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부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③ 계약이전의 효력 및 관리인·정리금융회사 특례 정비 (안 제14조의2·제14조의3·제14조의6·제14조의8)

- 신속정리에 따른 계약이전에도 권리·의무 승계 및 공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관리인의 권한·선임 및 정리금융회사의 계약이전에 관한 규정을 정비

④ 신속정리 대상 주주·채권자의 재산권 보호 (안 제14조의 11)

- 신속정리 처분으로 주주·채권자에게 귀속된 금액이 청산·파산 시 예상 지급액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사에 착수하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가 예상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함

⑤ 신속한 정리를 위한 절차상 특례 (안 제14조의12)

-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주주·채권자 보호 절차, 행정절차 및 기업결합 신고·심사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인수 금융기관의 이사회 결의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는 유지하고 적격 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최대 2영업일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함

⑥ 신속정리 처분 결과의 국회 보고 (안 제14조의10제6항)

- 금융위원회가 신속정리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의 내용·이유 및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전화: 02-2100-2911, 팩스: 02-2100-2919)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2026-11-02 발의

현행법은 1동의 상가건물이 여러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는 그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 유통 활성화 및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상권 침체로 집합 상가건물의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구분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로 제한하고 있고, 권리변동이 있는 공용부분 변경 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집합 상가건물의 리모델링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구분점포의 허용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집합 상가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 변경의 경우 동의율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집합 상가건물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조의2 및 제15조의2)**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1인)	2026-11-02 발의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경쟁당국이 중심이 되어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규제를 수행하고, 민사 및 형사 규제가 이를 보완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형벌 및 벌금 등 형사적 규제가 제도적으로나 실제 집행에 있어서 매우 과도한 편으로 이로 인해 민간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하고 기업의 예측가능성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그리고 해외입법례와 비교할 때 과도하게 많은 형벌조항을 갖고 있는 문제점도 있음.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는 심지어 경쟁법 즉 공정거래법에 형벌규정이 없는 경우도 상당수 있음. 34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살펴보면, 독일·스페인·이탈리아 등 16개국은 경쟁법상 형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영국·캐나다·호주 등 10개국은 담합행위에 한해 형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일본·프랑스 등 8개국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일부에 대해 형벌 규정이 추가로 있음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법 제40조제1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법 제47조제1항 또는 제4항),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법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형벌을 유지하는 한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안 제124조제1항제1호·제10호 및 제125조제4호)**

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8인)	2026-11-02 발의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대출성 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러한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제3자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현행법에는 해당 연대보증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와 별개로 연대보증인이 계속 보증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위법하게 대출상품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3자의 연대보증에 대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공정한 연대보증 요구를 억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안 제20조제2항 신설)**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등 10인)	2026-11-03 발의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중지명령 위주의 시정조치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공동행위 이전 경쟁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부당한 공동행위로 처분받은 사업자가 재차 공동행위를 하는 등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경쟁이 회복되는 수준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 명령을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자진신고자 감면 혜택에서 시정조치를 제외하여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7년간 2회 이상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등록·허가·인가·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연의원 등 11인)	2026-11-04 발의

최근 은행·온라인플랫폼·통신사 등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문제는 일부 사업자가 정보 조사 착수 전, 주요 서버와 로그 기록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재설치하여 유출 경위를 덮는 조사 방해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현행법상 이런 조사방해에 대한 제재는 보호위원회의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가 개시된 이후에 발생한 증거은익과 폐기에만 국한됨. 즉, 정부 조사가 착수되기 이전에 발생하는 증거 인멸 행위는 제재할 근거가 부재하다는 것임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정황을 알게 된 때부터 관련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되 복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본 보존 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은폐 목적으로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며 해당 자료를 불리한 자료로 추정하고자 함 **(안 제26조 등)**

재정경제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0인)	2026-11-02 발의

2020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매입임대(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말소되는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8년 등록임대 시 100분의 50)를 영구히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2026년 10월 1일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가 적용되며,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 과세가 적용됨. 이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 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법인세 추가 과세 세율을 경감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를 202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법인에 대한 추가과세 세율을 경감하여 적용(개인인 2주택자는 10퍼센트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15퍼센트포인트, 법인의 경우 10퍼센트)하되, 해당 주택에 대한 장기거주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30으로 적용**하고자 함.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를 공공부문에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2억원 한도)를, 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1억원 한도)를 감면**함 **(안 제97조의11 신설)**

재정경제위원회	자발적 탄소시장법안(정태호의원 등 12인)	2026-11-03 발의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발표 등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으나, 현행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만을 포괄하고 있고 배출권 가격 하락과 공급 과잉 등으로 기업의 감축 유인이 낮은 상황임. 특히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등은 감축투자 유인이 더욱 부족한 실정임

한편 파리협정 제6조 세부이행규칙 합의와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의 의무화 등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나,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은 감축실적의 발급 주체와 거래 플랫폼이 분절되어 있고 감축실적에 관한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자발적 감축실적의 발행·거래·소각에 관한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록기관·평가기관·거래소의 역할과 감독·제재 체계를 정비하며, 자발적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 동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기술과 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3인)	2026-11-03 발의

최근 불법촬영물 및 허위영상물 등의 유포와 함께 피해자의 성명, 주소, 학교, 직업, 사진 등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지속적인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불법촬영물 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해서도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을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별도로 유포된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로 인해 피해자 지원기관이 신상정보에 대한 삭제지원을 수행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유통방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신속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삭제지원 대상 신상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의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관련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3인)	2026-11-04 발의

연구시설·장비의 규모와 종류가 다양해지고 연구 현장의 활용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를 도입 단계의 심의부터 유휴·저활용장비의 이전·처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가 필요한 연구시설·장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활용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현재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정·운용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도입한 연구시설·장비에 머물러 있어 그 외의 공공재원으로 도입된 연구시설·장비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률적인 구속력에 한계가 있어 유휴·저활용 장비가 방치되는 등 현장에서의 실효적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공재원으로 도입된 연구시설·장비 전반을 아우르는 관리체계와 보유기관의 의무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연구자가 공공영역에 도입된 연구시설·장비에 편리하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신진연구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여 연구 효율성 제고 및 국가 연구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3인)	2026-11-02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경영기반 확충을 위하여 협업지원, 입지지원, 사회적책임경영 지원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이 기술력 부족으로 인공지능의 도입·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관련 지원 계획·추진체계나 수단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지속적·체계적인 정부지원의 한계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격차가 초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하며,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 촉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학습용데이터의 제공·생성을 지원하며, 지역별 중소기업 인공지능 확산허브를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62조의10부터 제62조의14까지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1인)	2026-11-02 발의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상인이 거래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공동판매장을 설치하거나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하여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주문 및 판매가 가능한 전통시장이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당일배송,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전통시장은 배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 요구에 대한 적시 대응이 어려운 바, 온라인 주문 뿐 아니라 집하·포장·물류·배송까지 연계되는 통합 유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공동물류·공동배송 체계 구축, 공동배송센터, 냉동·냉장 시설 설치·운영 및 관련 상인교육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당일배송특화시장을 지정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시장의 배송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의3 신설 및 제26조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은수의원 등 10인)	2026-11-03 발의

현행법은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인 침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실제로는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보상하는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등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15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2026-11-03 발의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에서 주요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을 납품대금에 연동하기 위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연동을 회피하기 위해 수탁기업에 미연동 합의를 강요·유도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관련 위반행위를 이유로 분쟁조정을 요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위반 사실을 알고 있는 기업 내부자나 거래관계자 등의 적극적 신고·제보가 필수적이나, 신고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익행위의 장려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신고·제보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5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0인)	2026-11-04 발의

인공지능 기술이 물리적 실체와 결합하는 이른바 피지컬 AI가 본격화되면서, 지능형로봇은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음. 특히 휴머노이드로봇을 중심으로 주요국 간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지능형로봇의 활용 영역도 제조 현장을 넘어 물류, 배송, 돌봄, 의료, 국방·재난안전 등 사회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2008년 제정 당시의 하드웨어 중심 로봇을 전제로 하고 있어 로봇인공지능시스템과 휴머노이드로봇 등 새로운 유형의 지능형로봇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정책 심의기구가 부처 소속에 머물러 범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이 약하고, 로봇 학습용데이터 수집·활용, 부품 공급망, 산업 간 융합, 중소기업 지원, 해외시장 진출 등 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 근거가 부족함. 아울러 새로운 로봇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거쳐야 할 개발, 실증 및 사업화 과정에서의 규제 개선에 대한 규정도 미비함

이에 **법률의 제명을 「지능형 로봇산업 진흥법」으로 바꾸고, 국무총리 소속 로봇산업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융합 촉진, 중소기업 특별지원, 로봇데이터 기반 구축, 지역 로봇산업 거점 지정 등 진흥 기반을 대폭 보강**하려는 것임. 로봇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로봇을 활용하기 위한 안전 관련 규정은 보완함으로써, 지능형로봇의 개발·보급과 안전한 활용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1인)	2026-11-04 발의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컨설팅업체 등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자료 작성,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 부당개입 실태조사, 자진신고자 면책제도, 신고포상제 등을 운영하며 부당개입행위에 대응하고 있음

그런데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금지 규정, 부당개입 의심업체에 대한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수사의뢰, 신고·제보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자금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당개입행위의 적발과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제3자 부당개입행위의 금지·제재·처벌 근거를 명시하고, 피해기업이나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한 신고자보호를 규정**하는 등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제재를 통해 정책자금융자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78조의2부터 제78조의5까지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6인)	2026-11-05 발의

우리나라는 정유산업이 수출 주력산업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항공유 시장에서 수출 1위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항공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 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비정유산업 분야 조기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속가능항공유의 보급 및 공급의무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에 **지속가능항공유 공급 의무 제도를 마련하고, 공급 의무의 미달분에 대한 유예(초과분에 대한 이월) 등 조정제도를 추가하는 한편 초기 공급망 구축과정에서 기업체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공급의무자인 석유정제업자가 항공유에 혼합할 목적으로 바이오항공유 등을 수입하는 경우 또는 지속가능항공유를 생산할 목적으로 친환경정제원료로 바이오디젤을 수입하는 경우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을 면제**하는 등 관련 특례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항공유 및 그 원료에 대한 연구개발, 정제·제조·혼합·공급에 필요한 시설 설치·개조·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시범보급사업 및 시험연구를 수행하는 때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을 면제하고, 품질기준과 관계없이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신규 석유대체연료의 연구개발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2026-11-06 발의

우리나라는 전 세계 특허출원 4위, 인구 10만 명당 특허출원 건수 2위를 기록하는 세계적인 지식재산 강국임. 그러나 권리 보호 수준을 나타내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는 2026년 54위에 불과하여, 국가 혁신 동력과 기술 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임

이는, 현행법이 특허침해소송절차에 피고의 침해 부인 시 구체적 행위의 내용·방식 등 제시 의무 및 자료제출명령제도 등 증거의 편재 문제 해결을 위한 증거 확보 수단을 두고 있음에도, 특허 침해자가 소송과정에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훼손하여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여 증거 확보에 제한이 있기 때문임

이에 **특허침해소송절차에서 침해의 입증 및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수집 수단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특허 침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2026-11-06 발의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 손해배상, 비밀유지명령 등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는 침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대부분 침해 혐의를 받는 상대방의 사업장, 전산시스템 및 관련 자료에 집중되어 있어 권리자가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로 인해 자료의 폐기·은닉 또는 제출 거부가 발생하는 경우 실체적 진실 규명과 공정한 재판이 저해되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리구제 또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한편 독일과 일본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상대방 영업장에 출입하여 증거수집이 가능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당사자 중심의 증거개시(Discovery) 절차를 통하여 소송 초기부터 증거 확보를 지원하는 등 주요 국가들은 기술분쟁의 특성을 고려한 증거수집 제도를 발전시켜 왔음

이에 우리나라도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자료보전명령, 당사자에 의한 법정 외 신문,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변리사와 주고받은 법률자문서의 비밀을 보호**하도록 함으로써 증거 확보와 영업비밀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2026-11-06 발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사다리의 핵심이자 기업 수에 비해 매출과 고용의 기여도가 높아서 우리 경제의 중간층을 건강하게 하는 핵심 기업군임

그런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각종 시책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이러한 지원 혜택의 축소가 자발적인 성장을 기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중소기업에 제공되던 일부 특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견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년간 중견기업으로 간주하는 '졸업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초기 중견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전체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지원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비급여항목 관리에 관한 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026-11-03 발의

현행 의료체계에서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들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과 제공 방식을 결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동일한 진료임에도 의료기관별로 비용 차이가 크고, 환자는 비급여항목을 제공받을 필요성과 비급여항목의 적정 가격을 판단하기 어려워 과도한 비용 부담이나 불필요한 진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또한, 현재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부재하여, 의료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국가가 충분히 점검·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와 의료체계 전반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비급여항목의 범위, 비급여항목에 대한 정보공개, 관리체계 및 평가 기준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비급여 진료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2026-11-02 발의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차별이 발생한 이후의 시정만으로는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차별 예방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원사업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법률의 목적에 차별예방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별예방·시정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태조사·연구,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인식 개선 등의 사업과 전문기관 위탁·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차별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조, 제3조의2 및 제20조의2)**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2026-11-04 발의

현행법은 보일러, 압력용기, 요로 등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 해당 기기의 제조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중지 명령과 같은 사전적 예방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보일러, 압력용기와 같은 열사용기자재는 한번의 사고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후적 처벌에 더하여 사용중지 명령과 같은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함

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 해당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수입의 중지,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여 압력용기와 같은 열사용기자재로 인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9조의3 및 제72조제2호의2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026-11-04 발의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을 위해 구직자로부터 받은 제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입법례에 따르면, 강요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지식재산권 귀속강요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2항 신설, 제17조제2항제2호 삭제)**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0인)	2026-11-05 발의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주요 전력규제 사항에 대하여 전기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인가·승인 권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두고 있어, 전기위원회의 전문적인 판단이 실질적인 규제 결정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전기요금, 전력시장운영규칙,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력산업의 공공성 등 핵심 전력규제 사항에 대하여 전기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전력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요금 결정의 본질적 요소(헌법재판소 2017헌가25)를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과 국회 통제력을 높이는 동시에 전기요금 결정의 전문성·투명성·독립성을 높이고자 함

한편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및 전기사업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조사·감시·감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감독원을 새로 설립하여 전기·전력의 공공성을 유지·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 전력정책의 수립을 담당하고, 전기위원회는 주요 전력규제 사항을 독립적으로 심의·의결하며, 전력감독원은 전문적인 조사·감시·평가를 수행하고,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는 시장·계통 운영 및 사업 수행을 담당하도록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2026-11-03 발의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공사대금을 체불한 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을 공표하고 시공능력 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체불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이 공표된 자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공사대금 체불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0인)	2026-11-05 발의

현행 대토보상 제도는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만 보상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의 다양한 보상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고, 보상계약 체결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장기간 전매가 제한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

이에 **보상대상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주택 등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보상 선택권을 넓히고, 대토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전매를 허용**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사업지구 내 거주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상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는 권리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로 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이를 통해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토보상 활성화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63조 등)**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2026-11-06 발의

현행법은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열차를 이용한 여객에게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의 30배 범위에서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철도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화물의 멸실·훼손 등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을 뿐 철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여객이 입은 피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현재 코레일은 내부 매뉴얼에 따라 과실로 인해 예약 좌석을 제공받지 못한 고객에 대한 보상은 운임의 25%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철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좌석 미제공, 열차 지연·운행중지 등이 발생한 경우의 배상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좌석 미제공의 경우 여객 운임·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배상하되 철도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여객 운임·요금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하며,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철도사업자에게 전환하여 철도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이를 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1인)	2026-11-06 발의

택배서버스산업은 1인당 연간 이용 횟수가 218.1회에 달할 정도로 국민 필수서비스가 되었으나, 최근 심야배송·365배송이 확산되며 택배기사의 상시적 과로 위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지난 2021년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1·2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기사의 기본 작업범위 범위를 집화·배송으로 정하였으나, 일부 현장은 택배기사가 분류업무와 다회용기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표준계약서 혹은 위탁계약서에 택배기사의 업무범위를 집화·배송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또한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을 1주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작업시간은 과로 위험을 고려하여 30%를 가산해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32조 및 제36조의2 등)**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국정감사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예산결산소위	11/9(월) 10:00	- 2027년도 예산안 심사
정무위	예산결산소위	11/10(화) 14:00	- 2027년도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	11/9(월) 14:00	- 2027년도 예산안 상정
과방위	예산결산소위	11/10(화) 10:00	-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국방위	전체회의	11/9(월) 14:00	- 2027년도 예산안 상정
	예산결산소위	11/11(수) 10:00	-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문체위	예산결산소위	11/9(월) 10:00	- 2027년도 예산안 심사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11/9(월) 10:00	- 2027년도 예산안 상정
	예산결산소위	11/11(수) 10:00	- 2027년도 예산안 심사
복지위	전체회의	11/10(화) 09:30	-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2027년도 예산안 상정
	예산결산소위	11/12(목) 10:00	-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기후노동위	전체회의	11/9(월) 14:00	- 2027년도 예산안 상정
	예산결산소위	11/11(수) 10:00	-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11/10(화) 10:00	- 법안 심사
	국토법안소위	11/11(수)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1/12(목) 10:00	- 2027년도 예산안 상정, 법안 의결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1/9(월) 10:00	**'3대 메가프로젝트'와 기계설비 역할 토론회**	정동만·유의동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11/9(월) 13:00	**AI 강국의 조건은 전력망**	이철규·박해철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9(월) 14:00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김소희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11/10(화) 14:00	**현실화되는 스테이블코인 혁신,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의 과제**	안도걸 의원실	금융투자협회 6층 리더스홀
	11/10(화) 14:00	**AI와 디지털 포용 모두를 위한 기술 혁신과 정책 과제**	서미화 의원실	의원회관 10간담회의실
	11/10(화) 15:00	**고용평등 공시제 간담회**	김소희·김형동 의원실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11/11(수) 14:00	**K-컬처 수출 50조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조승래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11/11(수) 14:30	**금융민주화, 가치금융신협 설립으로 시작하다**	민병덕·송재봉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강당
	11/12(목) 09:40	**디지털자산, 기관 중심 시대가 온다**	최은석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12(목) 10:00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박지혜·이학영 의원실	의원회관 1간담회의실
	11/12(목) 14:00	**Physical AI시대 도래와 보행권**	정성호·김영배 의원실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
	11/13(금) 14:00	**2026년 AI시대 고전번역의 모색**	김형동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자료집 등	11/9(월)	**「Data+」 제2026-18호(통권 제42호)**	국회도서관	
	11/10(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22호(통권 제310호)**		
	11/11(수)	**「금주의 서평」 제2026-43호(통권 제802호)**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56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1/4(수)	「금주의 서평」 제2026-42호(통권 제801호)	국회도서관	
	11/5(목)	「금주의 World Law」 제2026-42호(통권 제42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1/2(월)	방송통신(TMT)	정보보호 공시의무, 2027년부터 전체 상장사 등으로 확대
11/3(화)	지식재산권	생성형 AI 관련 음악 저작권 분쟁의 최신 동향과 시사점 – Suno 소송, AI 음성 복제 판결을 중심으로 –
11/3(화)	방송통신(TMT)	방미통위, 플로팅광고 삭제제한행위 조치기준 강화
11/4(수)	금융	최근 강화된 상장폐지 심사 기조에서 상장유지 및 개선기간 부여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11/4(수)	지식재산권	AI 리버스 엔지니어링(REA)과 ArtCraft 사례로 살펴보는 저작권법적 쟁점
11/5(목)	조세	세종 미래상속 Insight 4호
11/5(목)	환경	2026년 10월 기후환경 법규 업데이트 리포트
11/5(목)	모빌리티	2026년 3분기 모빌리티 규제 동향 - 레벨4 자율주행 제도 정비,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등
11/6(금)	글로벌리스크대응	미국 중간선거 분석 – 한국 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11/6(금)	금융	디지털금융 ISSUES (2026. 10. 16. – 2026. 10. 29.)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남형기 | 고문

프로필보기



윤형중 | 고문

프로필보기



김건훈 | 수석전문위원

프로필보기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이승상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